리더스시티



리더스시티 5블록(보류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 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 14번길 7)
- 공급 규모 : 2,135세대 (공공분양 1,423세대, 공공임대(10년) 712세대) 중 공공분양 주택 보류지 1세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으로 공급합니다. 동일세대 내 부부가 아닌 세대원 2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 청약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장자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리더스시티 5블록」 공공분양주택 아파트는 <u>견본주택 운영을 종료하여 관람이 불가능</u>합니다. 따라서 청약 전 반드시 홈페이지(http://www.리 더스시티.com)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 및 주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u>2024.12.19. 사용승인 완료,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미 시공된 아파트</u>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u>시공된 발</u> <u>코니 확장을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u>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취소 및 추가선택품목의 선택등은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잔금납부 완료 이후 즉시 입주 가능)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6.13.(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무주택기간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226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다만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2024.06.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금융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카카오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Ο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일 정	2025.06.23(월)	2025.06.24.(화)	2025.06.30.(월)	2025.07.01.(화)~ 2025.07.04.(금)	2025.07.14.(월)~ 2025.07.16.(수)
방 법	■(PC·모바일) 청약 ■(현장접수) 청약		■ (PC·모바일) 청약홈	■ 계룡건설산업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탄방동) / 장소 변경시 당첨자 개별통보 예정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 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 여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4.06.13.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24.06.13.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m'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1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1년 (단,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접수기간 내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공급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이후에 관계법규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공급대상에서 제외할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전광역시 조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규정 및 업무지침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예·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단 민영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Ι

■ 공급 위치: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228-9 (대전광역시 동구 안샘로 14번길 7)

■ 공급 규모 : 2,135세대 (공공분양 1,423세대, 공공임대(10년) 712세대) 중 공공분양 주택 보류지 1세대

■ 입주시기 : 최초입주개시 2024년 12월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납부 완료 이후 즉시 입주 가능)

2. 공급대상(국민주택)

[단위: m²/세대]

주택		주택형		주택	공급면적(n	ı²)	기타	ЯOF	MOF	МOF)+ UITIIH	총공급	일반	공급
관리번호 관리번호	모델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수	동	호		
2025000226	01	059.9400A	59A	59.9400	21.5439	81.4839	34.4665	115.9504	31.9582	1	506	1502		
2023000220					합 계					1	-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X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공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공급금액

■ 공급금액 (단위: 원)

약식표기	동	ㅎ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	90%)
ㅋㅋ표기	0	<u> </u>	대지비	대지비 건축비		계약체결일	계약체결일 D+45일	주택도시기금(융자금)
59A	506	1502	80,191,257	213,258,743	293,450,000	29,345,000	209,105,000	55,000,000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m²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공통 유의 사항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등기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
- · 매수자는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계약 및 전매시 필요한 인지세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우리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 개별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아파트 계약금 및 잔금 계좌의 경우 상기 계좌와 상이하거나 가상계좌로 관리될 수 있으며, **가상계좌의 경우 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예시 : 506동1502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506-1502홍길동" 기재)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입주개시

■ 계약 후 잔금완납시 즉시 입주 가능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주택도시기금 포함)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수령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합니다.
- 계약금 납부 후 잔금납일 까지 할인료 및 연체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연체이율 : 연 6.5%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불출)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잔금 납부기한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재산세, 관리비, 전가가스 등 제세공과금과 관계 법령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7.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8.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경비실, 커뮤니티시설(다목적실, 공방, 독서실,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맘스스테이션, 바이크스테이션 등)

П

추가선택품목(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발코니 확장 금액 (발코니 확장공사 시공완료)

주택형	야시표기	약식표기 공급가격		잔금(90%)	
	ㅋㅋ표기	Й	계약 시	계약체결일 D+45일	
059.9400A	59A	6,400,000	640,000	5,760,000	

2.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칸막이 제거 및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므로,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침실1 이중창),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오수 배관노출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Ш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 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리더스시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및 제25조에 의거 동일순위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1년 이상('24.06.13.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해당 지역거주자의 미달물량은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 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 하는 분은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지역 우선 공급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100%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
입주자	※ 대전시 1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6.13. 이전부터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거주('24.06.13. 전입한 경우 포함)
모집공고일	② 기타지역※ 대전시 1년 미만 거주자,	-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분
	세종시, 충청남도 거주자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1년 미만('24.06.14. 이후 전입) 거주자 포함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 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차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 '24.06.13.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24.06.13.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대전광역시 해당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산정 시 **대전광역시 내 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 해당지역인 대전광역시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대전광역시 1년 미만,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 하지 않더라도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의 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25.06.30**.)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 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준(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국민주택 청약이 불가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 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 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 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알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 해당 조항의 소명자료로 해당 건물이 속한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에는 반드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함'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하며, 그 외(발급기관 자체 양식에 따른 해당 문구미포함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하며, 소명 책임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에는 불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m² 이하	1억 6천만원
	단독주택		
제53조제9호나목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85m² 이하	5억원
	도시형 생활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m'를 초과하는 경우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 단순 연락두절 등 기타 사유 인정 불가)를 확인하고 자산보유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u>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u>
-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공급유형별(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 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 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야 하며,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215,500천원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건물+토지)	이하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구 벽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기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산지관리법」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기액에 토지기액이 포함되지 않는 바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기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기)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최초등 「자동 경우는 - 「장이 국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아래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자산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2-2>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적용유형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①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있는 경우	237,050천원 이하	41,830천원 이하
②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 는 경우 포함)	258,600천원 이하	45,630천원 이하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15,500천원 이하	38,030천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은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등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온라인 조회 시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별도 확인 필요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기준

- 적용대상 : 일반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청약 전 위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공급유형별(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표3-1>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ОІНЬ	우선공급(1순위자) (30%)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 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이하 '맞벌이')
-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인 경우 **20%p**,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완화 기준은 아래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2>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851,686	18,871,794	19,868,306	21,412,789	22,957,273	24,501,756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 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01111 7 7	위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일반공급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서류접수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자격검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시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지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소득			국세청			
エコ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 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 처 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IV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 요건을 구비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란?

-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1>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이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이 분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일반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우선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デ召号音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분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5>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1순위 동일 지역 내 경쟁이 있을 시 "<표6> 1 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5>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표6>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Ⅲ. 신청기준의「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5>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3-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5>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6>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 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 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시 확인사항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 당첨제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3. 주택소유확인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전매 제한

■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5.06.30)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 단, 전매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의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국민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하며, 동일 세대 내 부부가 아닌 세대원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각각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합니다.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중복청약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 유지기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계약 기간 등이 상이 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미 접수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 배정일(당첨발표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급세대의 500%까지 순위순차제를 적용하여 선정 및 예비순번을 배정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합니다. 1순위 동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6>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2순위 동일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VI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 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 구비해야 함	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청약홈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조회기간 : 2025.06.30.(월) ~ 2025.07.09.(수) (10일간)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서비스	문자	- 제공일시: 2025.06.3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Π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서류	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서약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0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장소에 비치
	0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동의서 당첨자 발표후 개별 안내예정) 당첨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 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단,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인정
	0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일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공통 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원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상기 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개명 이력 포함)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전체 포함)	배우자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신생아 우선공급 미적용 시에도 세대원 자격 확인 위하여 필수 제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단독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 위하여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서루	류유형			
구분	필수	추 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이 만 18세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출생신고 전인 경우 포함) 소득 및 보유자산 관련 출산가구 완화기준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접수장소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 포함] 2세 미만 자녀,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0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0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쳐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신생아 우선공급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출
		0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배우자	• 당첨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제3자 대리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네니 인 신청	0		위임장	본인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 접수장소에 비치
시 추가	0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단, 2020.12.21.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부적격 통보를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받은 경우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5.07.14.(월)~2025.07.16.(수) 10:00~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	루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_ :	(해당자)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HOL	이즈데샤지 되거거즈 나라 제초 기취 내 제초회 거요 제이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본인			그는 어두 속만 66 시표		•기다 사업구제기 국국 역구 복진을 위해 표구에는 사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계약 시	0		계급요 요요 확진 시ㅠ	는 근건	•ㅂㅁ öㅜo 또는 ㅂㅁ 확인o
			신분증	본인	. 즈미드로즈 ㅠㄴ ㅇ저며치즈 서긔
	0		선판 등	는 근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0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도장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전자수입인지	본인	•「인지세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대리 계약 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 리신청은 불가)
	0	위임장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추가서류	0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6.13(급)) 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를 구매하여 계약체결시 반드시 지참해주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까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의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 일시 : 2025.06.30.(월)	■ 일시: 2025.07.14.(월) ~ 2025.07.16.(수) 10:00 ~ 17:00
	■ 확인방법	■ 장소
일반공급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www.applyhome.co.kr)</u>	- 계룡건설산업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변경시 당첨자 개별통보 예정

■ 분양대금, 발코니,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공급금액	우리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코니 확장	우리은행	당첨자 발표 이후 가상계좌 개별 안내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

- ※ 상기 계좌는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 각기 상이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이체 (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자명 예시 : 506동 1502호 계약자 홍길동 → '506-1502홍길동' 기재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입금증 및 계좌이체 확인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 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Ⅷ │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버립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 사실, 소득지산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사업 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약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사후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금액 등 포함)의 10%]을 공제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체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증빙자료 포함)을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체결 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시'(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로 미제출 시 수분양자가 직접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 가입하거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구 및 단지여건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악신청자 및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광고홍보물품은 실제 설계의 사실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으니, 반드시 정확한 설계사항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여건

- 본 지구의 남동측으로 천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본 지구의 북측으로 경부선 철도가 위치하며, 방음벽이 설치되어있으나 철도 운행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지 동측으로 천동지하차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 ・ 본 사업지 본 사업지 서측으로는 공동주택용지 4블럭이 위치 할 예정이며, 동측 대지내 공지 우측으로 종교부지가 위치하였습니다. 남측으로는 근란생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본 사업지 서측으로 38M, 남측으로는 15~24M 도로가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외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조성은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교통영향평가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상위계획 변경에 따라 일부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준공시점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의 도로, 공원, 녹지 등에 설치되는 지하매설물, 지상시설물은 개별 건축설계보다 우선하는 필수 기반시설로 정비계획, 사업시행인가 등 상위계획변경에 의거 위치, 재질,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나, 기타 사유로는 변경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바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남측에 501동, 502동에 소공원 1개소 및 천동초등학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여 이용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 본 단지 외부의 단지모형,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완충 녹지.단지 주/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자연석 쌓기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차높이,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도시가스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외부에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외부에 통신관련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통신 사업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 대전천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녹지, 등의 공사로 안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전체 배치계획상 일부 세대가 향의 방향이 남서향을 벗어 나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1개소 설치는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라 연도형 상가 권장구간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분양아파트(1,423세대)와 임대아파트(712세대/5개동), 지상,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유치원 전기실/발전기실, 기계실/저수조, 우수저류조, 단지출입구등의 시설물을 공유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치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단,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오차범위 내에서의 증감 차이는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 외도로 (지하주치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주출입구는 단지배치 및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하여 출입개소와 방향 및 형태(보도 경사로 포함)는 동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공용부위 (E/V 홀, 계단실 등)의 평면형태 및 마감, 이동 동선 등은 동별 라인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지상주차장, 중앙광장 ,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설치로 주차분배가 동별로 분배가 어려우며, 일부시설물은 본 아파트 단지에 임대아파트 5개동(712세대)이 설치 되어, 상호 공유하는 시설물로 설치되었으니 계약전에 충분히 모형등 확인 하시기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임대아파트 설치는 정비계획수립시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음
- 단지 지상주차장 배치로 인하여 차량 소음 및 진동, 차량 라이트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승하차 동선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전 충분히 모형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1동 1층 부분에 경로당, 주민공동시설-1, 전면으로 인접하여 1층 근린생활시설이, 우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필로티, 휀룸 배기구 돌출구조물 후면에는 주출입구 , 문주(경비실 포함)구조물이 설치로 소음 및 진동, 문주로 인하여 막힘 등으로 인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니 모형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02동 전면에 단지내 도로가 설치 되었으며, 인접하여 환룸배기구 설치 전후면은 단차가 5M이상 레밸차이가 발생하여 생활에 일부 불편함이 발생 할수 있으니 충분히 모형 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503동 지하부분에 주민공동시설-4(피트니스/골프연습장시설), 지상에 어린이놀이터,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설치로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레벨 차이로 인하여 보도 일부 부분에 계단설치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4동 전면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지상 보도 근접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및 전면에 대지내 공지-5가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등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레벨 차이로 인하여 보도 일부 부분에 계단설치로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1개소 설치는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라 연도형 상가 권장구간으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5동 지하부분에 주민공동시설-5, 인근으로 지상배기 돌출 구조물, 옥외 계단(승강기 포함) 및 보도, 지상주치장,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저층세대일부는 소음 또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506동 전면에 대지내 공지-5가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주차장 있으며, 지상배기 돌출 구조물과 인접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7동 인근으로 뽀족산이 근접해있어 저층세대 시야에 간섭이 발생할수 있으며, 지상주차장, 운동시설, 지상배기 돌출 구조물이 설치되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 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8동 1층 주변에 지상주차장,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상배기 돌출물이 설치되어 냄새, 부출입구 인접으로 소음 및 사생활 침해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9동 부출입구 인접으로 차량의 소음, 지상주차장 및 단지내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으로 인하여 저층세대 냄새, 소음 및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13동 1층에 관리사무소와 지하층 인근에는 지하저수조 및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 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와 인접에는 분리수거함등 배기돌출 구조물 설치등 저층세대. 사생활 침해 및 소음등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15동 주출입구 인접으로 차량의 소음, 지상주차장 및 단지내도로, 쓰레기 분리수거함, 중앙광장등,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등 으로 인하여 저층세대 소음, 냄새 및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계약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앙 광장주위로는 어린이집, 데크하부에 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장), 문화교실 공유오피스를 포함한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중앙광장 주변으로 503동, 505동, 513동, 515동 주동이 인접하여 소음등이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수 있으니 모형등 충분히 계약전에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은 단지계획상 외부도로에서 내부도로를 거쳐 지하주치장 및 지상주치장으로 진출입하거나 외부에서 직접 지하주차장으로 진출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주치장내 이동은 내부램프로 연결되어 있음. 지상 (상가용) 및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차대수는 총 2,733대 (상가: 8대 유치원: 5대 별도)로 공동 주치장으로 동별 분배가 아니며, 전기자동차 (28대)구획 부분은 충전시에만 사용하는 구획으로 전체 주차대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공간은 일부 동에 분산배치되며, 그에 따라 각동별 이동 동선 및 개소가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은 안전과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외벽 기단부는 석재 또는 석재뿜칠 (석재질감의 도료)로 시공되나 면적은 동별로 상이하며, 색채계획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dot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피트니스클럽, 주민공동시설 등)에는 내부시설물 (가구 및 인테리어, 운동기구 및 도서 등)이 일부 설치되며(분양CG참조),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513동 인근)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은 주부출입구에 설치되며,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주치장 층 각 동별로 설치되며, 공사시 위치 및 개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경비실은 주·부출입구에 인접하여 3개소 설치됩니다.
- 1층 필로티 내부에 제연휀룸 DA, 자전거치대, 설비배관 칸막이 벽체등이 설치 되어있으며, 홴룸 의 정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구조물에 의하여 통행 에 불편할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501동, 502동, 503동, 504동, 505동, 506동, 507동, 508동, 509동, 511동, 513동, 514동, 515동, 516동 옥상에는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되며 상세위치 및 집열판의 규격/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위 및 계단실은 제연구역으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개폐장치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위치와 개소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별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홀 창호사이즈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위치가 상이합니다.
- ・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점검교체주기 도래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일부동은 지하주차장과 지하EV홀과 단차에 의해 경사램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트렌치의 일부구간에는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옥외계단실/ELEV,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및 지하저수조 환기탑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탑이 설치되는 일부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환기용, 제연용, 발전기실용 등),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 (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팸플릿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 (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및 단지경계부위 담장의 디자인 (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어린이집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일부 동 전·후면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인접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키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이 해당 시설물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오니 인접동 저층세대 입주민께서는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출입구의 문주설치에 따라 501동, 502동 등 일부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며 필로티 에 배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소음, 분진 주동출입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변 맘스스테이션 정류장이 설치되며 이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 대기 장소로 이로 인해 소음 및 분진, 인접세대의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일부시설물(분양CG참조)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내의 추가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출입구-1 주민공동시설-7(바이크스테이션)시설은 자전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부시설물은 제공하지 않으며, 추후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이동통신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504동, 505동, 506동, 513동. 515동 옥상층에 설치하며, 향후이동통신 통화품질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 될수 있습니다.
-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 휀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발코니 전후면에 식재되는 나무의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저층 세대는 전후면에 지상주차장 설치로 소음, 빛공해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북측 철도변 방음시설은 본 사업지와 무관하며 이에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경부선 철로가 있으며, 기차 이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모형 및 본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기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게릴라성 집중 폭위(천재지변)로 인하여 주변 맨홀등 막힘 발생으로 지하주차장 우수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상주차장도로 외 비상차량도로 부분은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일반 차량 운행 시 그로 인한 포장 등 파손발생에 대하여는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치원인 교육연구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인허가 진행에 따라 입주시 원생 부족등의 사유으로 인하여 본 시설은 용도변경이 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견본주택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 (특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째내역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기하므로 마감째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째내역의 "급"은 동등품질 이상의 유사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대피공간, 발코니,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 포함)
-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 동체감지기는 1,2층과 최상층인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1층이 필로티일 경우 2층에만 설치합니다.
- ・ 세대통합관리함(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회장대 및 일반가구)는 붙박이형 또는 시스템형으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째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람.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재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키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레인지후드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협소 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알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설치가능여부를 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 (관상용식물, 사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 유닛은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설치되며,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환기 유닛 및 배관은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cdot 전열 교환기 장치는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등에 노출 설치되며, 설치 위치에 따라 덕트 파이프가 꺾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 침실1만 설치되고, 스탠드 및 벽걸이형 에어컨 기준으로 설치되며, 마감덮개 및 매립연결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일부 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건식공간으로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 또는 입주자가 개별 사용한 물 (화분 및청소 등)의 배수가 불가능합니다.
- · 일부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홈통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cdot 일부 발코니는 우수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설치개수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및 대피공간은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난간설치에 따라 이삿짐 이동시 난간대 높이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형(냉장고 및 붙박이장등) 이삿짐이 이동불가 할수 있으며, 이사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발코니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출입문은 철재방화문, 외부창호는 합성수지제창 (여닫이창)설치로 상이함. 또한 생활환경 및 내·외부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3층 이하 세대의 대피공간은 창고로 활용가능 하며, 3층 이하 세대의 대피공간 내부의 마감 및 도어의 사양은 기준층 대피공간의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합니다.
-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장골조내 매립냉매배관 및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 제조사, 형태, 재질, 분할, 프레임/창짝 사이즈, 유리사양, 창호개폐방향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결로현상에 따른 제반문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사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나)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 개별난방(가스보일라) 설치로 인하여 기기 및 각종 배관이 주방발코니, 싱크대 하부장에 분배기가 노출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각종 스위치, 등기구류, 콘센트, 도기류 및 수전류, 스프링클러헤드, 우수드레인 등은 본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상,하부, 좌,우 확장세대 단열재 등 마감 설치로 천정 및 벽체 등 돌출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확장 또는 비확장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그에 대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하부, 좌.우에 비확장 세대로 인하여 일부 단열재등 마감 설치시 벽체 또는 발코니 공간이 작아질 수 있으니 충분히 유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PL창호 모서리부분에 흰색이음선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확장세대에 의하여 일부 비확장세대의 우오수 드레인 및 벽체가 조정될 수 있으니 비확장 세대는 충분히 확인 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 주차 설치 예정대수는 지상 339대, 지하 2,407대 합계 2,746대 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색채계획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필로티, 캐노피 위치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형태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홍보 키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본 지구의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정비계획의 변경 및 시행/하기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이에 내한 사업주세의 색임은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1층, 2층, 3층 천정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며, 지하주차장 1층, 지하주차장 2층에 대하여서는 천정고 2.7M로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 사양등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압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 및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러한 결정에 동의 및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또는 권한을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 주택은 관련 법규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저층세대 및 이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당해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되어 있는 501동, 502동, 저층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당해시설의 지붕형태에 따라 일부 시야가 차폐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 유치원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ullet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바닥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경시설 및 식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기 바라며(이사 중 파손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함을 원칙으로 하며,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단지 보행출입구를 통하여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시 욕실, 주방, 발코니 및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수전 등 별도의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기변벽체, 창호 옵션기구 등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 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는 벽지 바름, 걸레받이, 천장몰딩, 등 미세한 치수는 포함하지 않음).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라인별로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시설로 공동주택과 별도 획지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시공을 위하여 시공관련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단실 현관 홀 바닥 마감재 규격 및 재질등은 시공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따릅니다.
-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 및 자연석 쌓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이파트 엘리베이터홀은 전층 환기창 설치하고 계단실은 5개 층마다 1개소씩 환기창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1층 출입구 인접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4항에 의거 설치되는 대피공간 내부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5항 에 의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할시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cdot 견본주택, 팸플릿,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흙단지 하단 조경시설)에 접한 501동, 503동, 505동, 506동, 507동, 508동 아파트 계단실(승강기 및 홀 포함) 내외부 기온차로 인하여 결로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할 수있으니 관리시 환기 등 충분하여야 합니다.
- 502동, 509동 지하주차장에서 장애자주차 위치가 차도 건너편에 위치하여(해당구간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안전통로로 표시지정) 생활 및 차량운용 간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513동 지하층 주변에 지하저수조, 펌프실이 위치하여 소음등이 발생할수 있은니 계약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501동 지하층에는 셀프 차량정비공간이 확보 되었으며, 정비관련 시설물은 미배치됩니다. 사용시 소음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수 있으니 계약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입구 차량통행 시 차단기 설치 위치가 경사로 근접 설치로 운행 시 불편함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모형등을 충분히 관람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발전기실 등 지하 관련시설 진입부의 위치한 주치구획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한 장비이동시를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있으나, 상황에 따라 차량 이동 요청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하 휀룸등. 환기관련시설에 인접한 주차구획의 경우 환기유닛 가동 시 차량으로 바람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지하1층, 지하2층 주차장 천정고는 2.7m이상이며, 지하3층은 2.3m 이상 설치로 지하2층에 일부 택배차량이 진입가능하나, 진출입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은 당사와 무관하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폭(최소 6,0m이상)은 공사시 일부 조정이 될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2동 503동 지하부분에 주민공동시설-2(스터디카페), 주민공동시설-3(주민회의살)이 단차를 이용한 데크계획으로 연결통로에 설치되었으며, 소음 및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단지는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지상주차를 계획하였으며, 모형등 계약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내공지는 지구단위 제2장 공동주택 용지 제9조(대지내공지)에 의거 공개공지개념으로 조성한 것으로 인접필지로 진입하는 통행로를 포함하여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 및 위급시 등의 대처를 위해 차량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항시 개방하오니, 모형등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주변 지형에 맞춘 계획으로 인하여 506동, 507동, 508동은 지허주차장 2층 까지만 연결 되었으며, 세대수에 맞추어 주차대수는 계획하였으니 계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501동, 502동, 505동~509동, 512동, 515동 지하주차장구획 부분이 일부 주동 하부 벽체에 설치 되어 주차시불편이 발생 할수 있으니 계약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관련사항

- 초등학생은 천동초등학교에 배치 예정입니다.
- · 중학생은 동부3학교군 동부4학교군에 배치되며, 고등학교는 대전광역시단일학교군입니다. 학교군은 향후 학생배치 여건 변화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내 유치원시설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에 따라 향후 타시설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됩니다.
-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현장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 성능 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리더스시티" 사용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공고문의 내용은 제작과정에서 오류 오기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히 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의무사항 적용여부)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VII-0.216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등급, I~VII)으로 표기)

■ 공동주택 성능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인증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설계기준 (제7조제3항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제1호)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기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전기부문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제3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5.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 되었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천원)
			택지공급가격	120,510,516
			기간이자	1,318,629
	택지비		필요한 경비	100,455
			그 밖의 비용	13,989,840
			계	135,919,440
			토공사	5,623,959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1,067,040
		토목	공동구공사	-
		上 上 十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37,707
			도로포장공사	918,943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8,534
건축비	공사비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9,721,282
			부대시설공사	313,905
			계	17,701,370
			공통가설공사	7,769,214
			가시설물공사	-
			지정 및 기초공사	5,280,997
		건축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46,982,290
			용접공사	-

	1		
		조적공사	6,049,648
		미장공사	8,354,228
		단열공사	10,338,866
		방수·방습공사	2,404,395
		목공사	11,659,891
		가구공사	1,751,480
		금속공사	6,833,336
		지붕 및 홈통공사	1,059,236
		창호공사	20,935,050
		유리공사	3,577,569
		타일공사	6,347,787
		돌공사	8,684,586
		도장공사	4,018,055
		도배공사	2,353,176
		수장공사	3,191,678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927,857
		계	158,519,339
		급수설비공사	3,085,373
		급탕설비공사	2,448,899
		오배수설비공사	10,432,997
		위생기구설비공사	6,598,661
	717114.01	난방설비공사	8,386,204
	기계설비	가스설비공사	1,257,118
		자동제어설비공사	525,891
		특수설비공사	836,684
		공조설비공사	5,419,252
		계	38,991,079
		전기설비공사	20,063,739
		정보통신공사	9,539,616
	그 밖의 공	종 소방설비공사	15,112,718
		승강기공사	5,736,852
		계	50,452,925
		일반관리비	8,969,674
	그 밖의 공사	비 이윤	15,314,014
		Й	24,283,688
	,	설계비	5,596,746
		감리비	2,061,959
		일반분양시설 경비	1,853,520
	간접비	분담금 및 부담금	2,713,163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11,045,293
		Й	23,270,681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34,211,718
		합계	483,350,240

■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 산출내역

(주)대한감정평가법인(m˚당 금액)	(주)중앙감정평가법인(m'당 금액)	
2,290,000원	2,160,000원	

6. 택지비/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구분	내 용	금액 (단위:천원)
택지비 가산비	택지비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필요적 경비	15,408,924
건축비 가산비	건축구조 형식, 주택품질향상, 인텔리전트 설치, 법정초과 복리시설, 친환경주택 건설, 법령개정에 따른 가산비, 지하주차장 충고증가 등	34,211,718

7.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감리회사, 감리금액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8,794,795,480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계룡건설산업(주) (314-81-07954) (주)대우건설 (104-81-58180) 금호건설(주) (104-81-31309) (주)태영건설 (105-81-74543)	계룡건설산업(주) (314-81-07954) (주)대우건설 (104-81-58180) 금호건설(주) (104-81-31309) (주)태영건설 (105-81-74543)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건축,기계: ㈜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105-86-72502) ㈜건축사사무소광장 (135-81-23685) 토목: ㈜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513-81-11531) 소방: (주)건창이엔지 (542-86-01429) 전기,통신: (주)동현기술사사무소 (112-81-52173)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8. 기타

■ 홈페이지 : http://www.리더스시티.com

LEADERS CITY 리더스시티

